

<h1>보도자료</h1> <p>2023. 3. 27.</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p>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8차 공청회 개최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대상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3. 3. 27.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8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①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3. 3. 27.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현장 방청 및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유튜브 채널)
- 사회 :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 발표 :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 김병필(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 류경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현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 김민정(변호사)
- 박형준(관세청 조세총괄과 관세행정관)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박수연(법률신문 법조팀장)
- 박 승(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수사계 기획반장)
- 윤준석(변호사)

② 양형기준안 개요

- 각 양형기준안과 그 설명자료는 공청회 자료집 참조[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공개토론회' 탭 - '공청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지정토론문 원문은 공청회 자료집 참조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양형기준 일반

-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건의 대다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만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무상 한계가 있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도 필요하다는 의견(김병필 교수)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새로이 양형기준을 설정할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에 대한 기준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답변(강선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2. 유형 분류

-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하여, ①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상이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항 제11호 위반범죄는, 같은 항 제9호 위반범죄와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거나(류경은 교수), ②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또는 비밀침해범죄에 가까우므로 이를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위반범죄와 다른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전현욱 선임연구위원)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① 소유형 분류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보통신

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는 법정형이 동일하고, 형량 통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혀 이질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동일한 소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무방하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과 ②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한 2020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최준혁 전문위원)이 있었음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하여,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범죄’를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라는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어색하다는 의견(류경은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소유형 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과 소유형 2(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수의 양형인자를 공유하므로 하나의 대유형으로 묶을 수 있고, 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오히려 유형분류의 체계와 관련성을 불분명하게 할 우려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3. 권고 형량범위

☞ 대유형 1 소유형 1(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권고 형량범위를 조금 더 넓고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류경은 교수)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에 대상범죄 통계의 80% 이상을 포섭하였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폭을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법정형 상한을 고려할 때 권고 형량범위의 규범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전현욱 선임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의 권고형량은 현행 양형실무의 상당수를 반영하는 형태로 정해지고 있어 기존의 양형실무를 완전히 무시한 ‘규범적 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최준혁 전문위원)이 있었음

4. 양형인자

☞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우연히 연결된 타인의 SNS 계정에 들어가는 등 침입 수단이나 방법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 수단에 관한 양형인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류경은 교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도 죄질에 따라 경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5. 양형기준 설정의 시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형벌이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법정형을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 양형기준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는 주장(김병필 교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 사업자가 구조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과 그로 인해 벌어진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인데, 그 외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등에 대한 범죄는 여전히 형사벌의 제재가 필요하고, 이번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은 실제 빈발하거나 양형기준 설정의 규범적 요구가 큰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해당 양형기준의 설정이 시의성이 있다는 답변(강선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권고 형량범위

☞ 관세범죄 양형기준에서 관세포탈 및 무신고 수입 등 유형에서 통고처분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일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민정 변호사)에 대하여, ① 관세범죄 양형기준은 구공판 사건 중 징역형 선고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통고처분과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경미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없고, ② 무신고 수입 및 부정수입의 권고 형량범위를 하향할 경우 오히려 각 영역 간의 균형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되어 특별감경인자를 형해화하

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③ 무신고 수입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범죄나 법정형이 더 낮은 조세포탈(5억 원 이상)보다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가 낮고, ④ 관세포탈의 권고 형량범위도 범죄성향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조세포탈 유형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권고 형량범위 하향은 부적절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실질적인 양형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수형인 몰수·추징 관련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김민정 변호사)에 대하여,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므로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없고, 관세범죄에서 몰수·추징의 선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경우도 상정하기 어렵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2. 양형인자

☞ 무신고 수입 등에서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수출에서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김민정 변호사)에 대하여, 무신고 수입에서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와의 균형, 결과반가치 측면, 양형실무를 고려할 때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무신고 수출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을 각각 삭제하자는 의견(박형준 관세행정관)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양형실무를 고려할 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형인자 해석은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한 법관의 양형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 무신고 수입 등의 특별감경인자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단서인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박형준 관세행정관)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라면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안은 부정수입에 해당할 수도 있어 무신고 수입 범죄와 관련된 양형인자의 정의 내용 단서에 별도로 포함할 필요 없다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 관세포탈죄에서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의 내용은 피고인의 자발적 반성이 아니라 국가의 집행에 의한 경우인데 감경인자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이근우 교수)가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양형인자에서 포탈된 관세의 징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결과불법의 회복과 가중인자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답변(박성훈 전문위원)이 있었음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1. 권고 형량범위

-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하다는 의견(박수연 법조팀장)에 대하여, 이번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유형과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다수범 가중을 통해 가중된 양형이 가능하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양형기준안에 따른 만취운전 교통범죄의 최대 형량

- 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6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최대 10년6월**
-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최대 15년**
- ③ 위험운전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6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최대 10년6월**
- ④ 위험운전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최대 15년**
- 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최대 **12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도주 2년 - 9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9년 + 3년 = **최대 12년**
- ⑥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21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유기도주 6년 - 18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8년 + 3년 = **최대 21년**

[양형기준 공통원칙]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박수연 법조팀장)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이고, 양형통계상 가장 많은 벌금 1,000만 원이 기본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정(양형통계상 벌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전체의 1% 남짓에 해당)하였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어린이 치상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영역이고, 치상 후 도주는 도주라는 행위 태양에 고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치상 후 도주’를 더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박 승 경감)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와 어린이 치상은 법정형이 거의 유사하고,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큰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가중영역은 치상 후 도주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답변(최익구 전문위원)이 있었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박 승 경감)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법정형보다 낮으므로, 비록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우선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등으로 적정한 형량범위 도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최익구 전문위원)이 있었음

2. 양형인자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박 승 경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일반감경인자로서 실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을 곧바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범죄 발생 자체만으로 양형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최익구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별감경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규정

중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는 문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동’이 아닌 오로지 ‘주차만이’ 목적인 경우로 명시하거나 주차를 위한 공간의 반경을 설정하는 등 양형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윤준석 변호사)에 대하여, 정의규정은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할 한정적인 상황의 조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를 위한 공간의 반경까지 설정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으며, 나머지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양형실무의 영역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별가중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의 정의규정에 물적 피해 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예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윤준석 변호사)에 대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어 가중인자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인명 피해의 경우를 가중인자의 예시로 넣기 곤란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해커를 상정한 것이므로 감경요소로 심신미약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위 규정에 근거한 특별양형인자라고 설명하면서, 범죄 자체의 특성상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이라는 인자가 적용될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결국 양형심리 사안이라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관세범죄에는 기본적으로 영리범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주형보다

벌금액과 추징액에 관해 관심이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벌금형과 추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취지에 공감하면서 양형위원회 향후 추진 과업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 양형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는 의견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하여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대유형 1의 중유형 다.)이 적용되고, 그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양형인자의 정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⑤ 향후 일정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단 회의를 거쳐 2023. 4. 24. 제123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